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
----------	----

제안년월일 : 2004. 4. 19.

제안자 : 이만재 의원외 2인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2003.7.18, 법률 제6927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2003.12.18, 대통령령 제18161)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55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상위법에 맞게 월 90만원으로 변경.
- 시·도의회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도 지급할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20만원의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현실화.

3. 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 나. 관계법령 : 「별첨 2」
- 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현황 : 「별첨 3」
- 라. 예산조치 : 2004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평창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제2항 【별표 2】 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숙박비 (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매월 9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 매월 20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55만원으로 한다.</p> <p>③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④임기 개시월과 임기 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5조(준용) <신 설></p> <p>제4조제2항 【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숙박비(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장 부의장</td> <td>가동급 151</td> </tr> <tr> <td>나동급 109</td> </tr> <tr> <td>다동급 84</td> </tr> <tr> <td>라동급 72</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원</td> <td>가동급 132</td> </tr> <tr> <td>나동급 86</td> </tr> <tr> <td>다동급 64</td> </tr> <tr> <td>라동급 56</td> </tr> </tbody> </table>	구 분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동급 151	나동급 109	다동급 84	라동급 72	의원	가동급 132	나동급 86	다동급 64	라동급 56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평창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5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매월 9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 매월 20만원 <p>제6조(준용) (중전 5조와 같음)</p> <p>제4조제2항 【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숙박비(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장 부의장</td> <td>가동급 166</td> </tr> <tr> <td>나동급 120</td> </tr> <tr> <td>다동급 92</td> </tr> <tr> <td>라동급 79</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원</td> <td>가동급 145</td> </tr> <tr> <td>나동급 95</td> </tr> <tr> <td>다동급 70</td> </tr> <tr> <td>라동급 62</td> </tr> </tbody> </table>	구 분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동급 166	나동급 120	다동급 92	라동급 79	의원	가동급 145	나동급 95	다동급 70	라동급 62
구 분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동급 151																								
	나동급 109																								
	다동급 84																								
	라동급 72																								
의원	가동급 132																								
	나동급 86																								
	다동급 64																								
	라동급 56																								
구 분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동급 166																								
	나동급 120																								
	다동급 92																								
	라동급 79																								
의원	가동급 145																								
	나동급 95																								
	다동급 70																								
	라동급 62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旅費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5】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회의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구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8】 (국외여비)

구 분	지급 기준일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시·도	의장· 부위원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위원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별첨 3」

강원도 시·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현황

(2004. 3. 31 기준)

시·군 별	인상 여부	비고
춘천시	인상	
원주시	인상	
강릉시	미인상	
동해시	미인상	
태백시	인상예정(차기 임시회)	
속초시	인상	
삼척시	미인상	
홍천군	인상	
횡성군	인상	
영월군	인상	
정선군	인상예정(차기 임시회)	
철원군	인상	
화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상	
인제군	인상예정(차기 임시회)	
고성군	인상	
양양군	인상	